

제공일자	2011. 6. 16(목)	담당자	이경희 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43	총 2 매

제목: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

의무 연금전환 정책으로 노후 소득대체율 17% 확보 가능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이경희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이 30조 원을 넘어서고 가입자도 240만 명에 달하는 등 외연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주로 가입대상 확대에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축적된 적립금을 어떻게 안정적인 종신소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이에 동 보고서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필요성, 정부 정책 및 효과를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은 취약한 노후소득원과 공적연금급여의 불충분성 때문에 필요하다. 노후소득원의 구성은 사적 이전소득이 31.4%를 차지하는 반면, 연금소득은 14.7%에 불과하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사적 이전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소득으로 전환시켜 사적 이전소득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30%(30년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 기준)에 불과하며 연금재정은 2045년 경 적자, 2060년 경 기금고갈이 예상되므로 국민연금제도의 보완·대체 측면에서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의무화하거나 연금을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있다.

먼저,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적립금 규모가 소액일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입자가 연금전환하므로 개인의 장수리스크, 투자리스크 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금가입자 단체가 확대되므로 역선택리스크가 축소되어

높은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선택권 제한, 자산에 대한 통제력 상실, 유연성 저하, 연금공급자의 지급불능리스크 등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은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부분 연금전환, 변액연금의 최저 종신중도인출금보증 등)을 활용하여 해소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폴트옵션 정책은 연금전환을 기본값으로 제시하고 개인이 일시금을 선택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금전환되는 방식이다. 이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정책 비용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연금전환 유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안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의무 연금 전환 정책을 주장한다.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권을 인정하고 신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부분 일시금(예: 25%, 30%)을 허용함으로써 유연성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이 정책에 따라 남자 가입자가 적립금 1억 원을 연금전환하면 현재에 비해 연금소득을 7.6%(55세)~11.8%(65세) 정도 증대시킬 수 있다. 만약 60세 남자가 적립금 전부를 연금전환시킨 후 종신연금을 수령하면, 소득대체율을 17% 정도 높일 수 있다.

제2안으로는 디폴트옵션 정책을 주장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의무 연금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검토할 수 있다. 연금전환 수준은 제1안보다는 낮겠지만 현재와 같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일임하는 경우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장을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정책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하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제3안은 현행 방식에서 세제를 개편하여 연금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일시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단일 세제를 적용하거나, 퇴직연금제도에서 전환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